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의거 아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특수관계자’란 시설 설치 ·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라.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202 년 월 일

입사지원자 : (인)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귀하